

# 시립 양천 거점형 우리동네 키움센터,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54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2월 6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- 가. 「시립 양천 거점형 우리동네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」는 양천구 권역의 초등아동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, 모든 아동들에게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거점형 키움센터와 함께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통해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결합한 사회복지시설임
- 나. 거점형 키움센터는 초등아동의 자유로운 놀이와 쉼의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, 지역 내 아이돌봄 기관·자원을 수평적으로 연계하는 지역 초등돌봄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, 여기에 키즈카페를 결합하여 아동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 시설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
- 다. 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, 안전한 놀이와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,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관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시설개요

- 기관명 : 시립 양천 거점형 우리동네 키움센터, 서울형 키즈카페
- 위치 : 양천구 목동 900-4(신목동역 지식산업센터 신축)
- 규모 : 지하 4층~지상 12층(연면적 26,311㎡)
- 사용면적 : 2층, 기부채납시설 활용
  - (키움센터) 1,440㎡ (436평) / (키즈카페) 206㎡ (62평)
- 이용아동 및 종사자 정원 : 아동 140명 / 종사자 14명

### 나. 위탁내용

- 위탁사무 : 「시립 양천 거점형 우리동네 키움센터, 서울형 키즈카페」  
운영·관리
  - 조직·인사관리, 예산집행 및 회계·계약, 물품 및 재산관리, 시설물 유지·관리
  - 초등돌봄 서비스 기획 및 문화·예술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
  - 초등돌봄 자원의 유기적 연계·조정 및 지역특화 돌봄서비스 제공
  -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한 놀이공간 운영
  - 적절한 이용비용 책정을 통해 키즈카페 이용에 대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전담인력 활용하여 돌봄·놀이 복합시설로 운영
- 위탁기간 : 5년(2023. 8. ~ 2028. 8.)
-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  - '23년 제1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: 적정('23.1.17.)
- '23년 소요예산(안) : 909백만원(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)
  - (키움센터) 706백만원 / (키즈카페) 203백만원

## 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### ○ 추진근거

- 아동복지법 제44조의2(다함께 돌봄센터)
-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(지원사업)
- 아동복지법 제53조(아동전용시설의 설치)
-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(관리·운영 위탁)
-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(돌봄시설의 설치·운영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### ○ 민간위탁 필요성

-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1,000㎡ 이상 규모의 사회복지시설로 10~25명 수준의 인력관리 및 초등학생 대상 문화·놀이·예술 체험 프로그램 기획·운영, 돌봄 서비스 제공 등 거점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
- 또한, 지역사회와 수평적 연계를 통해 아이돌봄 협력망을 구축하고, 다양한 인적·물적 자원의 체계적인 연계·매칭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자원 활용이 필요함
- 서울형 키즈카페는 아동의 안전한 놀이 및 돌봄을 비롯하여 아동 대상 프로그램(IT 기반 실감형 체험 프로그램 포함) 진행 등 놀이 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법인·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적·양적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##### [아동복지법 제44조의2(다함께 돌봄센터)]

-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"방과 후 돌봄서비스"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  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  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  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  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  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- 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##### [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(돌봄시설의 설치·운영)]

-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##### [아동복지법 제53조(아동전용시설의 설치)]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## [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(지원사업)]

-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1.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사업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,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

##### [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]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**[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]**

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  2. 위탁계약기간
  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  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  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 - 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  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  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8. 3.>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  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나. 예산조치 : 2023년 추경 예산 편성 요구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아이돌봄담당관 키움센터1팀 서명수 (☎ 2133 - 4815)